

관리번호	-	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(단순경비율사업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기타소득자용)	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			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			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⑦ 주사업장 전화번호	⑧ 휴대전화번호	
⑨ 신고유형	32 추계 - 단순율 40 비사업자	⑩ 기장의무	2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
		⑪ 신고구분	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⑫ 금융기관명	⑬ 계좌번호	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											
구 분								금 액			
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30 과세표준란의 금액											
⑮ 세 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											
귀속년도	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	2021년~2022년		귀속년도		2023년부터	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			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			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			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			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		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			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			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			
⑯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⑭)×세율(⑮) - 누진공제액(⑮)하단 세율표 참고]											
⑰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33 및 34 합계액×10%											
⑱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35 ×10%											
⑲ 결정세액: ⑯ - (⑰+⑱)											
⑳ 가산세액:								무(과소)신고			
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							납 부 지 연			
								기 타			
								합 계			
㉑ 총 결정세액: ⑲+㉒(합계란 금액)											
㉒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56(중간에납세액을 제외한 금액)×10%											
㉓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㉑-㉒										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
------	---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